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추가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9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추가 등	3
2.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규정 등	7
3.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권한 등	11

I. 제안경위

2026년 2월 2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구인·구직 활동의 중심이 신문·잡지 등 전통 매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무지·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한 허위·과장 채용광고가 다수 유통되어 구직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반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및 책임 부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념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명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의2제8호).

나. 직업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등의 사항을 명시함(안 제25조).

다. 거짓 광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를 추가함(안 제34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마. 거짓 광고 점검 및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바. 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1조의4).

Ⅲ. 검토의견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추가 등(제2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50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정의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의 예시로 “컴퓨터통신”을 명시하던 것을 “정보통신”으로 개정하고(제2조의2),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하며(제25조), ③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며(제25조의2), ④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제25조의2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거짓 광고 점검 및 조치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제50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	제2조의2(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생략)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신설>

-----정보통신-----

-----.

9. (현행과 같음)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

1. 2. (현행과 같음)

3.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4.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5조의2(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수, 광고 건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직

제5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1. ~ 4. (생략) ③ (생략)	<u>업정보제공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거짓 광고가 발견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짓 광고 점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거짓 광고 점검 및 조치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5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광고 점검 및 조치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의2는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의 예시를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구인·구직 활동의 중심이 신문·잡지 등 전통 매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모바일 정보 통신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직업

정보제공사업자의 정의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의 예시로 “컴퓨터통신”을 명시하던 것을 “정보통신”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제2조의2).

한편 최근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무지·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한 직업정보로 인하여 구직자가 해외 범죄조직으로까지 유인되는 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시행령 제28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던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고, 국외 취업 광고에 관하여 특히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제25조).

그리고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며(제25조의2),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제25조의2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거짓 광고 점검 및 조치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제50조).

개정안은 정의 규정 수정을 통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직업안정법」의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직자

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일평균 이용자 수, 광고 건수 및 매출액 등 기업정보를 고용노동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에 관한 근거 조항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규정 등(제34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제34조제1항의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고 하고, 제34조제2항에서 현행법상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규정으로 추가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

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사람(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으로 본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5.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전부 대통

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를 거짓 구인광고에 포함시키고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에 대한 법적 규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34조제1항의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소개사업자”라 하는 것은 개정안 제34조의3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사업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려는 것에 있어 거짓 구인광고의 주체를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는 표현과의 혼동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34조제1항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뿐 아니라 제28조·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과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까지 “직업소개사업자”에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1조의3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를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하고 있어 표현이 유사할 뿐 아니라 개정안의 “직업소개사업자”가 현행법의 “직업소개사업자등”보다 범위가 넓어 혼

동이 우려됨.

또한 「직업안정법」은 제3장 중에서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1절에서,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사항을 제2절에서,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3절에서 규율하고 있는 등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 모집, 근로자공급사업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을 하는 사람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직업소개사업자”라는 명칭으로 칭하는 것은 법체계와 다른 측면이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개정안 제34조제1항은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소개사업자”라 하여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개정안 제34조의3과 같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삭제 등 조치에 관하여 정하려면 “직업소개사업자”뿐 아니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게재한 구인광고에 대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규정된 거짓 광고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직업소개사업자”라는 약칭은 현행 법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권한 등(제34조의3,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이 제시된 것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34조의3 제1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으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제34조의3제2항),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예시로 외교부, 경찰청을 명시하고, 자료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함(제41조의2). 또한 개정안은 ④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제41조의3), ⑤ 영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함(제41조의4).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사업자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

-----외
교부, 경찰청 등 관계-----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광고 점검 및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신 설>	으로 정한다. 제41조의4(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 수, 광고 건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거짓 광고 점검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이 제시된 것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으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입법의 의의가 있음.

또한 자료 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관계행정기관 중 외교부와 경찰청을 명시함으로써 해외 취업사기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도록

록 한다는 의의가 있음.

그리고 개정안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짓 광고 점검과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관련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며, 영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거짓 광고 점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점검 및 이를 위한 지원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영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일평균 이용자 수, 광고 건수 및 매출액 등 기업정보를 고용노동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에 관한 근거 조항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에서 “채용광고” 대신 “구인광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의 다른 조항과 표현을 일치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 제41조의2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8